

영등포구의회  
제181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(共有) 촉진 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고기판 의원 대표발의】



2014. 4. 11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(共有) 촉진 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298호로 2014년 4월 8일 고기관 의원외 3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사회적·경제적 환경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키워드로 “공유(共有)”가 주목받고 있음. 소유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경제가 자원고갈, 이윤창출, 경쟁, 과잉소비를 유발시켰다면, 대비되는 개념으로 등장한 공유경제는 공유를 기반으로 자원절약, 가치창출, 신뢰, 협력적 소비를 지향하고 있음.

이 조례는 내가 가진 물건, 공간, 정보 등을 타인과 함께 나눔으로써 자원의 경제적, 사회적, 환경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“공유”를 촉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공공자원의 공유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나. 공유영역 발굴, 지원, 인식확산 등 공유정책을 적극 추진(안 제5조)
- 다. 공유촉진을 위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(안 제8조)
- 라.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(안 제9조, 제10조, 제12조)

마.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(안 제11조)

바.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13조 및 제14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

다. 합 의 : 기획예산과

#### 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공유촉진 정책 수립 및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, 공유사업에 대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를 위하여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및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자 제출된 조례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5조에 공유 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,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·지원,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8조에 비영리민간단체, 비영리법인, 중소기업, 사회적 경제활동 조직 중에서 공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

단체, 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,

-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공유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, 이외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고,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단체 등이 공공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등을 경감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공유 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- 이 조례안은 공간, 물건, 정보 등의 공유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·사회적·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주민이 주도하는 공유영역 발굴 및 실천과 공유단체 및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공유 촉진을 통해 지역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을 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, 제정 조례안의 목적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

목적이 있는 만큼 향후 ‘공유’와 ‘공유기업 및 단체’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보다 특정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일반주민들이 정책방향을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의 보완 대책이 요구됨.

-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2012.12.31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37개 기업 및 단체를 공유기업으로 지정·운영중에 있음,
  - 지정조건 : 공유를 통해 경제,복지,문화,환경,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기업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자치법

### 제3장 조례와 규칙

**제22조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